2012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

1. 의안제출

○ 제출일자 : 2013. 7. 1.

○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○ 회부일자 : 2013. 7. 2.

2. 결산개요

ㅇ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
-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
-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

O 결산의 의의

- 지방자치단체의 세입·세출예산, 채권,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, 기록, 정리하여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,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음
-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환류(Feed Back)역할
-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 발생

O 결산의 절차

- 세입·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
-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숭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

3. 검토의견

- o 2012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8억3천5백56만원으로, 집행액은 17억8천9백42만8천270원이며, 불용액은 4천6백1십3만1천730원입니다.
- o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99만원, 국외여비 905만원,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화여비 311만원,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 각종 수당 2,443만원 등 4천6백1십3만1천730원으로, 지난해 1천9백1십7만240원에 비해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.
-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계획된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, 추경을 통해 예산삭감 등의 방법으로 유용한 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,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